

재산세 [과세대상] 변동 신고서										처리기간
										즉시
납세 의무자	①성명(법인명)						②주인(법인)등록번호			
	③상호(대표자)						④사업자등록번호			
	⑤주소(영업소)									
	⑥전화번호			(휴대전화:)			⑦전자우편주소			
⑧재산소재지	⑨재산 종류	⑩용도		⑪면적 (수량)	⑫취득 일자	⑬변동사유		⑭소유자		
		공부상	현황			연월일	사유	사실상	공부상	
	오피스텔	업무 시설	주택				주거용 으로 사용			
※ 안내사항 ① 본 신고는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건축물(7월),토지(9월)에서 주택으로 과세 유형을 변경하는 신고입니다. ② 재산세 변동신고로 인하여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(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등)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③ 사무용으로 사용전환 시 반드시 변동신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*e-하나로민원 주민등록사항 열람에 동의합니다. ☐ 「지방세법」 제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세[과세대상]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영통구청장 귀하										
※ 첨부서류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										수수료
										없음